

# 베트남

##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4.9

## I. 일반 개황

1. 국가 개요 .....	5
2. 약 사 .....	6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7

## II. 경제 · 정치 동향

1. 경제 동향 .....	9
가. 국내경제 .....	9
나. 국제경제 .....	18
(1) 수출입 동향 .....	18
(2) 외국인투자 동향 .....	19
다.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19
(1) 국제신인도 .....	19
(2) 대외지급능력 .....	20
2. 정치 · 사회 동향 .....	22
가. 정치 동향 .....	22
나. 사회 동향 .....	22
3. 성장의 동인 및 장애요인 .....	23
가. 성장의 동인 .....	23
나. 성장의 장애 요인 .....	25

### Ⅲ. 외국인투자 환경

1. 외국인투자 정책	27
가. 개요	27
나. 외국인투자 형태 및 절차	27
(1)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분류	27
(2) 외국인투자 사업의 형태	30
(3) 외국인투자 절차 (합작투자의 경우)	34
다. 외국인투자 우대 및 규제 조치	35
(1) 외국인투자 유치 부문	35
(2) 외국인투자 우대 조치	37
(3) 외국인투자 규제 조치	40
2. 외국인투자 여건	42
가. 무역 및 외환관리제도	42
(1) 수출입 허가	42
(2) 관세제도	43
(3) 외환관리제도	44
나. 금융제도	46
다. 노동	51
라. 입지조건	55

## IV.에너지 산업 동향

1.개 요	58
가. 에너지 산업 개발 필요성	58
나. 에너지 산업의 성장 잠재력	59
다. 개발정책	60
2.석유가스 산업	62
가. 매장량	62
나. 생 산	64
다. 천연가스 처리 계획	67
3.정유 산업	72
4.전력 산업	76
가. 개 요	76
나. 발전설비 건설 계획	77
다. 전력자원 개발현황	78
라. 원자력발전	80
마. 주변국과의 전력개발 협력 추진	81
바. 전력공급 확대 방안	83

## V. 우리나라의 진출 확대방안

1. 진출현황 및 애로점 .....	85
가. 우리기업의 진출현황 .....	85
나. 애로점 .....	87
2. 진출 확대방안 .....	92
가. 진출 전략 .....	92
나. 진출 유망분야 .....	93
3.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현황 .....	97
가. 수은 자금지원 .....	97
나. EDCF지원 .....	98
다. 금융지원 확대 방안 .....	99



베

트

남



## 요 약

□ 베트남 경제는 GDP기준 세계 57위(391억 달러, 2003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64위(480달러, 2003년)

- 세계 GDP의 0.1%, 우리나라 GDP의 6.4%

□ 정치구조 : 베트남 공산당 체제하의 안정적 정권 유지

- 1976년 통일 이후 총리(판 반 카이), 대통령(쩐 득 르엉), 총서기장(농 득 만) 등 권력의 3축을 중심으로 안정적 정권 유지

- 농 득 만(Nong Duc Manh) 행정부가 개혁 필요성을 인식하고, 新회사법의 제정, 외국인투자법 개정,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개혁파들의 입지 강화

□ 산업 및 무역구조 : 아직은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음

- 1986년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고도 경제성장 지속

- 산업구조

○ 서비스업 38.8%, 공업 38.6%, 농업 22.7%로 개방 정책 실시 이후 공업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무역구조

- 원유 등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입수요 증대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는 소폭의 적자 기록

- 주요 무역상대국

- 2001년의 대미 무역협정 타결로 수출은 미국에 집중(22%)되어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입이 높은 비중(14%)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 추진

- 1988년 이후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4,585건 254억 달러에 이르러 베트남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 투자 부문별로는 초기에는 봉제, 의류 등 노동집약 산업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원유 개발 플랜트 등 대형화되고 있음.

□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진출 고려

- 베트남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잠재 시장으로서 단기적 이익추구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진출 등 경제협력 기반 구축 필요



# I. 일반 개황

## 1. 국가개요

일 반	<p>위 치: 인도차이나 반도</p> <p>면 적: 330 천km<sup>2</sup> (한반도의 1.5 배)</p> <p>기 후: 아열대성(북부), 열대성(남부)</p> <p>인 구: 81.4 백만 명(2003)</p> <p>수 도: Hanoi(267만 명)</p> <p>행 정 조 직: 28개주, 수도, 7개 연방직할지</p> <p>민 족: 베트남인(88%), 화교, 크메르인</p> <p>언 어: 베트남어(공용어)</p> <p>종 교: 불교(80%), 카톨릭, 카오다이교</p>
정 치	<p>독 립 일: 1945. 9. 2(프랑스)</p> <p>정 부 형 태: 사회주의 공화제</p> <p>국 가 원 수: Tran Duc Luong 대통령</p> <p>의 회: 단원제(498석)</p> <p>주 요 정 당: 베트남 공산당</p> <p>국제기구가입: UN, IMF, ADB, ILO, ESCAP, ASEAN</p>
경 제	<p>G D P: 391억 달러(2003)</p> <p>1인당 GDP: 480달러(2003)</p> <p>화 폐 단 위: Dong</p> <p>회 계 연 도: 1. 1~12. 31</p> <p>산 업 구 조: (2002) 서비스업(38.8%), 공업(38.6%), 농업(22.7%)</p> <p>주요수출품: (2003) 원유(18.7%), 섬유류(18.0%), 신발류(11.2%)</p> <p>주요수입품: (2003) 기계류(21.4%), 정유제품(9.7%), 섬유류(8.2%)</p> <p>주요부존자원: 석탄(35억톤), 석유(10억톤), 철광석(7억톤)</p> <p>경제개발계획: 제7차 5개년 개발계획(2001~2005)</p> <p>경제적강점: 농수산자원 개발 잠재력, 풍부한 저임 노동력</p> <p>경제적약점: 기술인력 부족, 인프라 미비</p>

## 2. 약 사

- 1883년 베트남, 프랑스의 보호국이 됨.
- 1887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에 편입
- 1930년 호치민 베트남 공산당 결성
- 1941년 베트남 독립연맹(베트민) 결성
- 1945년 베트민, 하노이 입성, 독립 선언  
호치민을 대통령으로 하는 베트남 민주 공화국 수립
- 1946년 프랑스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개시(1946~54)
- 1954년 베트민군, 프랑스와의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승리(5월)  
제네바 협정 체결로 인도차이나 전쟁 종결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남북 베트남 대치(7월)
- 1955년 남베트남, 고딘디엠을 수반으로한 베트남 공화국 수립
- 1960년 하노이의 지원으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베트콩) 결성
- 1965년 미국, 중부지역인 다낭에 상륙(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1965~73)
- 1967년 남베트남, 구엔 반티우 대통령 취임
- 1969년 해방전선, 남베트남 공화국 임시 혁명정부 수립(6월),  
호치민 사망(9월)
- 1973년 파리 평화 협정 체결, 전쟁종결 결의
- 1975년 사이공 함락(4월)
- 1976년 총선 실시(4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탄생(7월)
- 1978년 소련과 우호협력조약체결(11월), 베트남군 캄보디아 침공(12월)
- 1986년 제6차 전당대회에서 도이머이(刷新)정책 채택, 개방·  
개혁 실시

## I 일반 개황

- 1989년 베트남군, 캄보디아에서 철군
- 1990년 종전후 최초로 미국과 공식대화 재개
- 1991년 캄보디아 평화협정 체결(10월), 중국과 국교정상화(11월)
- 1992년 신헌법채택(4월), 한국과 국교 수립(12월)
- 1994년 미국, 대베트남 경제제재 해제(2월)
- 1995년 ASEAN 가입(7월), 미국과 국교 정상화(8월)
- 1996년 제8차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총리, 총서기장 연임
- 1997년 판 반 카이(Phan Van Khai) 총리 및 쩌 득 르엥(Tran Duc Luong) 대통령 취임
- 1998년 APEC 가입(11월)
- 2001년 제9차 전당대회에서 농 득 만(Nong Duc Manh) 총서기장 선출(4월), 10개년(2001~2010) 경제·사회 안정과 발전 전략 채택
- 2001년 미·베트남 무역협정 발효(11월)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2년 8월 24일(북한과는 1950. 1. 30 수교)
- 주요협정 : 무역, 투자보장, 항공협정(93), 이중과세방지협정(94), 세관협력협정(95), 외교관 및 관용사증면제협정(98) 등

- 교역현황

<표 1>

한·베트남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2004 1-7	주요품목
수 출	1,731	2,240	2,561	1,750	석유제품, 직물, 통신기기
수 입	386	470	511	392	원유, 수산물, 신발류

- 해외직접투자현황(2004년 7월말 현재, 순투자 기준):

497건 940,783천 달러

## II. 경제·정치 동향

### 1. 경제 동향

#### 가. 국내경제

<표 2>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f
경제성장률	4.8	6.8	6.9	7.0	7.2	7.0
재정수지/GDP	-4.0	-2.8	-0.4	-1.8	-2.5	-3.6
소비자물가상승률	4.3	-1.7	-2.9	3.8	3.1	5.8

자료 : IFS, EIU

#### (1) 국내경제 및 경제정책

##### □ 고성장 기조 유지

- 2003년의 성장률은 7.2%에 달하였고 올해 1/4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7.1%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금년에도 내수증가, 대미 교역증가, 외국인투자 심리 호전 등에 힘입어 7%대의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물가 상승 전망

- 물가상승률은 2003년의 3.1%에서 금년에는 식료품 가격상승, 소비 증가 및 Dong화 평가절하로 인해 5%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참고] 경제 동향 요약

#### □ 개 요

- 베트남의 2003년 명목GDP는 391억 달러로 GDP기준 세계 57 위임.
  - 동년 세계 명목 GDP(36조 1,634억 달러)의 0.1%, 우리나라 GDP(6,053억 달러)의 6.4%에 불과함.
- 1인당 국민소득은 480달러로 세계 164 위(2003년)이며 세계평균인 5,130달러는 물론 개도국 평균 1,170달러보다도 낮은 저소득국임.
- 외환보유액 : 약 61억 달러(2003년 12월 기준)
- 신용등급 : Moody's: B1, S&P: BB-, Fitch: BB-

#### □ 산업구조

- 서비스업 38.8%, 공업 38.6%, 농업 22.7%로 개방정책 실시 이후 공업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 무역구조

- 원유 등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성장에 따른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입수요 증대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는 소폭의 적자 기록
- 주요 수출상대국은 2001년의 대미 무역협정 타결로 미국에 집중(22%)되어 있으며 이어 일본(14.5%), 호주(7.7%), 중국(6.6%) 등임.



- 5대 수출품목은 원유(18.7%), 의류(18.0%), 신발류(11.2%), 수산물(11.0%), 쌀(3.6%) 등임.
- 수입은 중국이 원자재 수입수요로 1위국(14%)이며, 이후 한국(12%), 일본(11.4%), 싱가포르(10.7%) 등임.
- 5대 수입품목은 1위가 기계류로 전체 수입의 21.4%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후 정유제품(9.7%), 섬유부자재(8.2%), 철강(6.6%), 전기제품(3.9%) 등임.
- 교역규모 : 수출(199억불), 수입(255억불)

#### □ 제조업 중심으로 내수 육성

- 내수활황에 힘입어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03년중 민간부문이 18.7%, 외국인투자 부문이 18.3%의 성장을 보였고, 산업생산의 중심이 종래의 호치민 중심 남부지역에서 하노이, 하이퐁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민간기업 및 외국인투자 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시장경제 체제가 정착되고 있음. 베트남 정부는 전체 5,600여개 국영기업 중 약 2,000개 기업을 향후 5년간 민영화할 계획임.

(2)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 성장전략과 개발노선

- 베트남은 개혁노선 채택이후 개방을 통한 외국자본 및 기술의 도입과 해외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국내개발을 추구하는 대외지향적인 경제성장정책을 펴고 있음.
- 베트남의 경제목표는 일차적으로 안정적인 개방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거시적 관리를 기초로 국제시장과 국내시장의 안정적 통합을 추구하는 것임.
- 2001년 4월, 제9차 공산당전당대회에서 경제안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2001~2010년간 경제사회발전전략」과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1~2005)을 수립하였음.

<표 3>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거시경제목표

농림·수산업 생산	연평균 4.8%
공업 생산	연평균 13.1%
서비스 생산	연평균 7.5%
전체 수출 규모	연평균 14~16%
농림·수산업 비중	GDP 대비 20~21% (2005년 기준)
공업 및 건설업 비중	GDP 대비 38~39% (2005년 기준)
서비스업 비중	GDP 대비 41~42% (2005년 기준)

□ 거시경제 목표

- 베트남의 거시경제 목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 II 경제·정치 동향

경제 및 노동 구조의 전환을 통해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고,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임.

- 우선 경제적으로 2005년까지 GDP 규모를 1995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시킨다는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5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을 7.5%로 유지함.
- 부문별로는 농림·수산업 부문에서 4%, 공업 및 건설업 부문에서 10.4%, 서비스 부문에서 6.8%의 GDP 성장률을 달성할 계획임.

<표 4> 고용구조 전망<sup>주)</sup>

제조·건설업 종사자 비중	20~21%
서비스 부문 종사자 비중	22~23%
농업·임업·수산업 종사자 비중	56~57%
기술직 종사자 비중	30%
도시 실업률	전체 노동인구 대비 약 5.4%

주 : 2005년 기준.

- 한편 2005년까지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GDP 대비 20~21%, 공업 및 건설업의 비중은 GDP 대비 38~39%, 서비스업의 비중은 GDP 대비 41~42%로 설정하고 있음.
- 고용구조면에서 보면 공업 및 건설업 종사자 비중을 2000년의 16%에서 2005년에는 20~21%로 증가시키고, 서비스부문 종사자 비중은 21%에서 22~23%로 증가함.
- 또한, 농림수산업 종사자수와 그 비중은 2000년의 63% 수준에서

2005년에는 56~57% 수준으로 축소시키며 기술직 비중은 2000년의 20%에서 2005년에는 30%로 증가시킴.

## □ 부문별 경제 목표

### ① 농업부문

- 농림수산업의 연간 성장률은 4.8%, 농업부문 GDP의 성장률은 4.0%로 설정되었음. 농림수산업 부문의 GDP의 구조는 농업이 75~76%, 임업이 5~6%, 수산업이 19~20%를 차지하게 됨.
- 곡물생산량은 2005년까지 3,700만 톤에 이를 전망인데, 이중 쌀이 3,400만 톤, 옥수수가 300만 톤을 차지하고, 매년 350만 톤의 쌀을 수출할 것으로 보임.
- **쌀 재배** 면적은 400만 헥타르 수준을 유지할 것인데,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 위치한 생산성이 낮은 약 40~50만 헥타르에 이르는 쌀 재배 지역은 수산업 및 옥수수, 목화, 콩 재배지로 전환할 계획임.
- 국제경쟁력과 시장수요가 있는 주요 산업작물들 예를 들어 고무나무, 커피, 차, 후추, 설탕, 목화, 담배 등의 재배를 장려하고 확대함.
- **삼림보호 및 개발**을 위해 500만 헥타르에 대한 조림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05년까지 삼림 비중을 38~39%까지 증대시킴.
- **관개시스템** 발전을 통한 토질 향상, 집약적 재배, 작물수확 증대, 새로운 농지개발 등을 추진함. 특히, 650만 헥타르의 쌀 재배지역과 150만 헥타르의 채소 및 산업작물 재배지역에 대한 관개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 중의 하나임.

## II 경제·정치 동향

- 비농업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노동력구조변화를 촉진하고, 현재 63% 수준인 농업종사자수를 2005년까지 56~57%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 농촌지역민의 수입과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농업종사자의 평균수입을 현재의 1.7배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를 줄일 계획임.

## ② 공업부문

- 베트남 정부는 공업발전을 위해 자본지출, 설비혁신, 선진기술 도입 및 적용, 산업의 현대화를 적극추진하고 있음.
- 비교우위산업을 발전시키되 가공 산업, 수출증대 산업, 농촌지역의 농업 및 경제 발전과 관련된 산업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 석유 및 가스, 금속(철강, 알루미늄, 귀금속), 기계제품, 전자제품, 기초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함.
- 경쟁력이 있는 국내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산업화와 현대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음. 베트남은 평균 13.1%의 산업생산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전자 및 정보기술** 산업부문에서 제품의 국산화 및 기술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전자 부품, IT 및 통신설비, 전자산업 설비 생산을 유도하고 있음.

- **기계산업**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국내 설비제조 수요의 약 25%를 담당하고, 오토바이 부속품의 70~80%, 자동차 부속품의 40~60%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계획임. 기술 및 설비의 혁신, 중요한 기계산업 부분의 현대화와 더불어 자본지출 및 투자가 강화되고 있음.
- **조선산업**을 발전시켜 2005년까지 10만 톤급 선박 건조, 40만 톤급 선박 수리 능력을 갖추고 선박설비 및 부품의 40%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함.
- **석유산업**분야에서는 남부 및 서남부 가스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지대를 건설하고, 제1호 정유공장을 2004년까지는 완료하여 2005년에는 600만 톤의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
- **광물자원 개발 및 가공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보크사이트 광석개발, 알루미늄 광석제련 및 알루미늄 가공을 추진함. 알루미늄의 경우, 국내수요 충족을 위해 전기분해에 의한 7만 5천 톤의 알루미늄과 100만 톤의 수출용 알루미늄 광석을 생산하고 생산능력을 300만 톤까지 늘릴 계획임.

### ③ 재원조달 목표

- 향후 5년간 동원할 수 있는 **개발재원**은 매년 11~12%씩 증가하여 600억 달러(2000년 환율 기준)에 이를 전망인데, 이 중 국내자본이 약 2/3를 차지함.
- 상업차관 도입, 해외채권 발행, 증권시장 개방 등을 통해 약 10~20억 달러에 이르는 해외자본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 나. 국제경제

### (1) 수출입 동향

<표 6>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f
경 상 수 지	1,177	1,106	682	-604	-1,899	-2,200
경상수지/GDP	4.1	3.6	2.1	-1.7	-5.0	-5.2
상 품 수 지	972	375	481	-1,054	-2,582	-2,700
수 출	11,540	14,448	15,027	16,706	19,881	23,200
수 입	10,568	14,073	14,546	17,760	22,463	25,900
외 환 보 유 액	3,326	3,416	3,660	4,121	6,085	n.a.
총 외 채 잔 액	10,700	12,787	13,900	14,000	15,000	n.a.
총외채잔액/GDP	38.5	41.0	36.9	38.9	38.3	39.7
D. S. R.	10.8	7.0	6.5	6.6	4.9	4.1

자료 : IFS, GDF, EIU

####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 농산물, 석유류, 원유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입도 자본재 및 원자재 수요로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임.
- 금년도 경상수지는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외국인투자 유입과 국제원조로 보전하고 있음.

#### □ 대미 무역협정의 영향 기대

-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2001년 12월에 베트남 의회에서 비준됨에 따라



양국간 무역 및 대베트남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대미 수출은 신발·의류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베트남 총수출의 22%를 차지하였음.

- 2003년 섬유·의류 무역협정 체결로 대미 수출시 쿼터가 적용될 예정이나, 쿼터 배정량이 생산량을 밑돌 것으로 보여 외국인투자 기업을 포함한 관련업체의 타격이 예상되며, 최근 대미 수산물 수출 관련 분쟁도 향후 수출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은 WTO가입을 위한 사전신청을 제출하고 EU, 미, 일 등 관련국과의 협의를 진행중이며, 2006년 경 정식가입이 예상됨.

## (2) 외국인투자 동향

### □ 외국인투자 승인액은 증가세

- 최근 외국인투자 관계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투자 허용분야 확대와 제조업 및 유전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장려 정책 등에 힘입어 2003년 외국인투자 허가액은 31억 달러로 전년보다 15%가 증가하였고, 이중 신규사업 투자는 19억 달러에 달함.

## 다.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1) 국제신인도

#### □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당행 국별등급 : D0('03. 5) → D0('04. 5)

- I.C.R.G. : 64/140('03. 3) → 73/140('04. 3)
- Euromoney : 73/185('03. 3) → 74/185('04. 3)
- I.I : 73/172('03. 9) → 78/172('04. 3)
- OECD 등급 : 5등급('03. 4) → 5등급('04. 4)
- S&P, Moody's : BB-, B1

####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EXIM) : 공공부문 전액인수, 민간부문 제한적 인수
- 네덜란드(Atradius) : 승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한도없음
- 영국(ECGD) : 단기인수 가능, 중기는 제한적 인수
- 독일(Hermes) : 단기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2) 대외지급능력

#### □ 양허성 차관위주의 양호한 외채구조

- 외채가 주로 IMF 및 세계은행 차관을 포함해 양허성 차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D.S.R.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매년 선진국(Consultative Group)들의 원조가 유입되고 있으며 2003년 12월에 열린 세계은행의 자문그룹 회의에서 세계은행 및 주요국 등 국제원조 기관들은 28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였음.
- 2000년에 대러시아 루블화 채무 110억 달러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어 23년 만기 17억 달러의 채무로 전환, 채무상환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음.

### 【참고】 베트남의 HIPC 관련 진행 사항

- 베트남은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로서 2001년부터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빈곤퇴치 지원프로그램(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협의를 진행해 왔는 바, 이는 HIPC채무구제의 전단계로 파악됨.

#### □ 세계은행의 HIPC 채무구제

- 통상 HIPC국가에 대한 채무구제를 위해서는 초기단계로 해당국은 세계은행에 빈곤퇴치계획(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의 지원을 받아 3년간 양호한 프로그램 이행실적을 보여야 하며 해당국은 Poverty Reduction Stragety Paper (PRSP)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음.
- 세계은행은 이 제출된 PRSP를 검토하여 파리클럽을 통한 리스케줄링(나폴리조건 방식의 경우 현가기준 최대 67% 탕감)을 실시하고, 그 결과 대외채무 감당능력(Sustainability)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HIPC를 졸업시키게 됨.
  - 단, 동 방식으로 채무감당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구제 조치됨.

#### □ 베트남국에 대한 채무구제 가능성

- 베트남은 2003년 11월에 세계은행에 PRSP를 정식제출하였고 세계은행은 금년 2월부터 동 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며, 최근 베트남이 제출한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가 개최되어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임.

## 2. 정치·사회 동향

### 가. 정치 동향

#### □ 점진적 개혁 추진 예상

- 2001년의 제9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개혁주의자인 Nong Duc Manh이 총서기장에 당선되었으나 개혁정책 추진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급진적인 개혁은 기대하기 어려움.
- Nong Duc Manh 행정부는 개혁지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신 회사법의 채택, 외국인 투자법 개정,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개혁파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
- 당 중앙위원회는 민간부문 육성과 함께 공무원 부패 방지 정책을 추진중이며 지방 소수민족의 화합에도 주력하고 있음.

### 나. 사회 동향

#### □ 부정부패 방지 대책

- 공무원 및 국영기업 간부의 부패에 따른 예산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1월 정부는 공무원 및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산공개 조치를 시행하였음.

#### □ 소수민족 대립이 사회불안 요소

- 베트남은 중앙고원지역에 많은 소수종족이 산재해 있는데 정부는

이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여건 개선 조치를 통해 2001년 초에 있었던 것과 같은 대규모 소요사태 예방에 주력하고 있음.

- 캄보디아 내의 베트남 난민 송환문제를 두고 양국 및 UN 난민위원회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제원조 중단 가능성이 있음.
- 최근들어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과 국제원조에 힘입어 빈곤감소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어 원조국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 3. 성장의 동인 및 장애 요인

#### 가. 성장의 동인

##### □ 경제성장 잠재력

- 베트남은 1975년 통일된 이후 전쟁 후유증, 비효율적인 경제운용, 서방제국의 경제제재 조치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1979년 말부터 계획경제하의 부분적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신경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회복의 전기를 마련함.
- 1986년 말 제 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개방·개혁정책인 도이머이(刷新) 정책을 채택한 이후 외국인투자법 제정, 재정금융개혁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한 결과 물가 안정, 재정적자 축소, 외국인투자 증대 등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이후 베트남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최근 10년간 연평균 7%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서 200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39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는 57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구매력 기준으로는 1인당 GDP가 2,500달러(2003년 기준)에 이르고 있어 국내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 가능성도 큰 상황임.

#### □ 양질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

-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국민 기본 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남베트남 시절의 자본주의 영향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도 커서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변 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비해 양질의 노동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음.
- 한편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서 상당수의 월남 난민들이 홍콩, 호주, 미국 등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들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해외교포들 및 그 자녀들의 국내 귀환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외국에서 유학한 고급 노동력 유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 정치적 안정

-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총서기장, 총리, 대통령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

세력이 미약해 상당 기간동안 정치적으로 안정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나. 성장의 장애 요인

### □ 관료주의로 행정 소요시간 및 비용 과다

- 외국인투자사에 제도적으로는 투자 허가 기간이 2~3개월이나 실제로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투자허가와 그 이후의 토지 사용계약, 공장건축허가 등의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실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많으며 당초 예상보다 인허가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함.

### □ 열악한 사회 인프라

- 전력부문은 2001년 말 현재 광역지역(district)의 98%와 기초지역(commune)의 85%를 포함하는 전국적인 전력망이 형성되어 있으나 송전 및 배전망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력 손실, 전력 품질의 저하, 정전이 흔히 발생하고 있음.
- 도로운송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 많고 컨테이너의 운송 및 통관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
- 도로여건은 호치민시 등 남부의 경우 비교적 좋은 편이나 하이퐁-하노이 구간 등 북부지역이 특히 열악한 실정임. 도로 및 교량이 너무 낡았거나 좁아 대형 구조물의 경우 도로 운송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 □ 불균형적인 발전

- 베트남이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성장의 과실이 외국인투자 지역인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등의 대도시에서만 집중되고 있어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과의 빈부격차가 매우 큰 상황임.
- 또한 개방경제하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신속히 적응한 계층이 신흥 부유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계층은 점차 소득 향상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계층간의 갈등이 향후 노출 될 가능성이 있음.

### □ 정책의 잦은 변화

- 베트남이 개방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내부 상황에 따라 이미 발표한 정책도 자주 변경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급입법도 적용된 사례가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음.



## Ⅲ. 외국인투자 환경

### 1. 외국인투자 정책

#### 가. 개 요

#### □ 외국인투자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베트남은 국민경제 발전, 천연자원 개발, 노동력 및 기타 국가 잠재력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외국 자본 및 기술을 적극 유치하고자 1987년 12월 29일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을 공포하였으며 1988년 9월 30일에는 베트남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을 공포하였음.
-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차에 걸쳐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였음.

#### 나. 외국인투자 형태 및 절차

##### (1)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분류

#### □ 그룹 A 프로젝트

- 투자규모의 구별 없이 아래 분야에 속하는 프로젝트
  - 공단,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BOT, BTO, BT 프로젝트
  - 항구, 공단 건설 및 운영, 해상, 항공운송사업

<표 7> 주요 경제정책 추이

연도	주요 정책 및 조치
1986	- 개인기업,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소유권 인정 - 생산계획, 자금조달, 저품판매 등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개별 사업 단위로 이양 - 도이머이 노선 채택
1987	- 국영기업개혁에 관한 법령 제정 - 검문제 철폐, 제조업체의 해외무역 허용 등 기업의 영업영역 확대 - 외국인투자법 제정
1988	- 외환관리법 수출입·관세법 제정 - 국영기업의 정리와 피고용자의 해고 개념 도입 천명 - 민간기업에 대한 규모 제한 철폐 고용의 자유 허용 - 은행제도 개혁(국가은행과 상업은행 분리)
1989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가투자협력위원회(SCCI) 설치 - 재화와 용역에 대한 시장가격제 확립(3월) - 수출가공구 설치 발표 - 국영부문의 보조금 완전 철폐
1990	- 외국인투자법 1차 개정 - 「사기업법」 제정(2월) - 「회사법」 제정(12월)
1991	- 외국인투자 및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수출가공구 설치허용법안 통과 - 사회안정화전략 채택(제7차 전당대회) - 외환거래소 설립 : 호치민(8월), 하노이(11월) - 국영기업의 민영화 가능성 제시(12월)
1992	- 새로운 수출입 관세법 시행(3월) - 시장경제 도입을 명시한 헌법 승인(4월) - 외국인투자법 2차 개정(12월)
1993	- 토지법 개정(7월) - 파산법 시행(7월)
1994	- 외환시장 개설(10월) - 노동법 제정(11월)
1995	- 토지·내수면·해수면에 대한 임차료 규정 및 시행령 시행(1월) - 행정위반 처리법령(7월)
1996	- 민법 시행(7월) - 행정위반 처리 시행령(10월) - 외국인투자법 3차 개정(12월)
1997	-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개정(3월)
1998	- 국영기업개혁위원회(NERC) 설치
2000	- 외국인투자법(6월) 및 외국인투자법 시행령(7월) 개정 - 호치민 주식거래소 개설
2002	- 노동법 개정

### III 외국인투자 환경

- 석유가스 사업
  - 문화 출판, 신문, 라디오, TV, 질병진료, 교육, 훈련, 과학연구, 치료약 생산
  - 보험, 재정, 회계, 감정
  - 판매용 주택건설
  - 국방, 안보분야 프로젝트
- 4,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전기, 광산개발, 제철, 시멘트, 기계 제조, 화학, 호텔, 사무실, 임대주택, 레저시설 프로젝트
  - 도시용지 5ha 이상, 기타 용지 50ha 이상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 A 그룹에 속하는 프로젝트는 총리의 허가 사항임.

#### □ 그룹 B 프로젝트

- 그룹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프로젝트.
- 그룹 B 프로젝트는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의 허가사항이나, 5백만 달러 미만의 투자일 경우 해당 지방 당국의 승인으로 가능함.
- 그룹 B 프로젝트 가운데, 2000년 7월 제정된 Decree 21/2000/ND-CP의 제114조에 명시된 사업은 심사 및 승인 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음.
- 이는 수출가공지역에서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는 사업, 500만 달러 미만의 투자사업, 생산물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 등임.

## (2) 외국인투자 사업의 형태

### □ 사업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

- 베트남에 사업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단지 쌍방간의 비즈니스 계약에 의거,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투자형태이며 별도의 법인설립이 없기 때문에 계약상의 무한책임을 짐.
- 양측의 책임과 의무 및 생산물 분배는 계약에 의거 결정되며 조세의 무는 각각의 당사자에게 있음. 즉 베트남측 파트너는 현지조세법, 외국측은 외국인투자 관계법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함.
- 사업협력계약은 MPI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고 이 계약은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MPI의 허가와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양도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행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양 당사자가 계약의 기한연장에 동의했을 때에는 MPI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만료 이전에도 사업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종료 또는 취소의 경우 사후처리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음. 처리비용은 모두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임금 및 사회보험료, 세금, 차입금 등의 채무처리가 우선 되어야 함.

### □ 합작투자(Joint Venture Enterprises)

- 합작투자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운용하기 위한

### III 외국인투자 환경

법인(Joint Venture Enterprise)을 설립하는 것으로 유한책임회사이기 때문에 합작기업의 위험부담 및 이윤분배는 합작당사자의 출자지분에 따름.

- 외국측 출자액은 법정자본금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액의 최고한도는 없음. 외국측의 법정자본금 출자형태는 외화, 공장플랜트, 건설엔지니어링, 기계/공구, 특허권, 기술로 한정되어 있고 베트남측은 베트남화와 외화, 건설, 토지사용권 등임.
- 베트남측으로서는 출자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토지의 사용권을 현물 출자함. 합작계약 전에 토지사용권의 출자가액에 대한 양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
- 베트남측 합작파트너는 대부분이 국영기업(중앙정부 및 지역인민위원회, 공산당산하 기업)으로 사회주의 기업경영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큼 비능률적, 비생산적, 비합리적 측면이 있음에 유의해야 함.

#### □ 100% 단독투자기업(Enterprises with 100% Foreign Capital)

- 외국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100% 투자되고 운영되는 기업으로 기업의 소유, 경영 모두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임. MPI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아 기업의 정관을 등록하면 기업이 설립됨.
-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 허가신청서, 기업정관, 투자자의 외국에서의 법적 자격 및 재무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조사서
- MPI에 신청하여 증자를 할 수 있으며 감자는 인정되지 않음. 기업

소유자가 비거주자 일 때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 대리인을 지명하여 이 대리인을 MPI에 등록할 수 있음.

#### □ BOT 계약방식

- BOT(Build-Operate-Transfer) 계약은 외국기업이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고 이를 일정기간 운영한 후에 무상양도하는 방식임.
  - BOT 유치대상은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과 같은 인프라 및 도시개발, 병원건설, 리조트개발, 공업단지 건설 등임.
  -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시, 성 인민위원회에서는 BOT 계약 유치 사업 목록을 작성·발표하고 있는데 BOT 사업의 신청창구는 중앙정부의 경우 MPI, 지방의 경우 각 인민위원회임.
- BOT 방식에 의한 진출절차는 ① 정부의 사전자문을 받아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 ② 낙찰되면 정부가 정한 BOT 실시기관과 계약체결 및 베트남내법인 설립 ③ 토지사용권 등 각종 부대계약 체결 등의 순임.
- 베트남 정부는 BOT 투자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있음.
- BOT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토지임차료는 무료로 하며 이윤세는 10%로 이익이 발생한 해부터 처음 4년간은 면제되고 다음 4년간은 50%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등 최고 우대세율이 적용됨.

&lt;표 8&gt; 투자 형태에 따른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사업협력 계약(B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초기 투자 불필요</li> <li>· 계약으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유연성 존재 (이익분배, 경영방식 등)</li> <li>· 베트남측의 토지, 건물 등 현물의 정확한 평가 불필요</li> <li>· 사업기한의 설정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li> <li>· 독자적으로 베트남인 고용 불가능</li> </ul>
합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의 인재, 생산, 판매망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초기 투자부담의 경감 가능</li> <li>· 베트남측 파트너의 힘을 빌어, 내수시장 진입 용이</li> <li>· 각종 행정수속, 인허가 취득에 유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측과의 의견조정이 어렵고 경영방침, 노무관리, 이익처분 등 문제로 갈등 발생소지 존재(중요 사항의 결정에는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li> <li>· 베트남측의 잉여인력, 노후설비 등을 넘겨 받게 되는 경우 발생</li> <li>· 기술유출 가능성</li> <li>· 토지 등 베트남측이 통상적으로 출자하는 현물의 평가 애로</li> <li>· 투자이익의 독점 불가</li> </ul>
단독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측의 경영방식 구사 가능</li> <li>· 투자이익 독점 가능</li> <li>· 기술, 정보의 유출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투자제한 분야에서는 내수 시장 진출에 제약 상존(합작형태만 허용)</li> <li>· 초기 투자부담이 큼</li> <li>· 정부기관, 베트남기업과의 인맥 구축 애로</li> </ul>

자료 : KOTRA

- 프로젝트의 조사, 설계, 건설, 운영목적으로 기기, 장비, 부품, 물자를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하며 보조계약자에 대해서도 성격에 따라 면세 또는 감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BOT 계약은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음.
- BOT 계약에 의한 외국기업의 진출이 많지 않은 것은 BOT 계약사업의 경우 대부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나 토지사용 및 외환관리 등에 있어 문제점이 많기 때문임.
- 특히 투자자금 회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용요금(전기, 수도요금 등)의 설정에 있어 투자가의 재량권이 너무 적은데다 정부의 BOT 사업에 대한 보증조건도 불명확하여 리스크가 크기 때문임.

#### □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대표사무소(Foreign Representative Office)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 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함.
- 베트남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됨.

#### (3) 외국인투자 절차(합작투자의 경우)

##### 가) 합작선과 예비상담

- 세부적인 투자계획 및 협의서 교환



### III 외국인투자 환경

- 양자간 투자방향서 및 협의서 교환
- 양자간 사업타당성 조사실시
- 정관 및 합작계약서 초안작성(대부계약서 포함)

#### 나) 허가신청 기관

- 그룹 A에 해당하는 사업 : 총리
- 그룹 B에 해당하는 사업: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또는 해당 지역의 관계당국

#### 다) 사업인가

- 제출서류 심사후 투자인가서, 합작법인 정관 등록 확인서 교부
- 허가 소요 시간
  - A 그룹 프로젝트 : 근무일 기준 45일 이내
  - B 그룹 프로젝트 :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

### 다. 외국인투자 우대 및 규제 조치

#### (1) 외국인투자 유치 부문

- 외국인의 대베트남 투자는 특별 투자장려 분야, 일반 투자장려 분야, 조건부 투자분야, 투자 금지분야 등으로 나누어지므로 우선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에 속하며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함.

### □ 특별 투자장려분야

- 수출주도형 상품
- 자연, 경제, 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건설
- 국내 원부자재가 소요된 기계류, 전자부품 생산
- 생명공학, 전자공학, 제조신기술, 통신분야, 정보통신분야
- 환경오염 방지 및 쓰레기 처리
- BOT, BTO, BT 프로젝트 등

### □ 일반 투자장려분야

- 농림수산업 분야 : 농림수산물 가공 수출산업 등
- 산업 분야 : 광물탐사 및 채굴 등

### □ 투자제한 분야(조건부 투자허가)

- 합작투자기업 또는 사업협력계약(BCC)형태 투자만 허용
  - 국내외 통신망의 구축과 운영(BCC만 가능)
  - 항공, 철도, 해상운송, 공항건설(BOT, BTO, BT 프로젝트인 경우는 해당 개별 법규 내지 규정에 따름) 등
- 수출비율 80% 이상 의무화 : 오토바이생산 등
- 국내자원 소요 투자프로젝트 : 자원개발 투자를 수반해야 하는 사업
- 유통업 : 행정지도로 단독투자 규제

## □ 투자금지 분야

- 국가안전과 방위,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의 역사적 문화적 유물, 선량한 관습과 전통에 유해한 프로젝트
-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프로젝트
- 국제조약상 금지된 유독한 화학물질의 생산이나 유독약물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 (2) 외국인투자 우대 조치

## □ 법인세

- 외국인투자 기업의 조세 체계는 외국인투자법에 규정되어 있음. 표준세율은 28%(국내외 기업 모두 적용)인데, 외자기업은 20%, 15%, 10%의 우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산업공단에 진출하는 경우는 '산업공단법'에 따라, 수출가공공단에 진출하는 경우는 '수출가공공단법'에 따라 더욱 유리한 세제혜택이 주어짐.

## □ 수출가공구에 대한 우대 조치

- 수출가공구는 제품수출 및 생산과 수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에 의해 설립된 산업지역으로 가공구 내에 입주하는 모든 투자 조직 및 개인은 수출물품의 제조, 하청 또는 조립생산 뿐만 아니라 수송, 하역, 수리, 보험 및 은행 등의 서비스업종도 운영할 수 있음.

<표 9>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우대세율표

법인세율	감면기간	투자분야	공업단지		
			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	
표준세율 (28%)		호텔, 금융, 보험, 유통, 서비스업			
우 대 세 율	우대세율 (I) *20% 적용주 <sup>3)</sup>	흑자전환후 1년간 면세, 이후 2년간 50% 경감	표준기업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우대세율 II, III 어느 것에 도 속하지 않는 제조업	· 서비스업 · 제품의 50% 미만 수출 (제조업)	
	우대세율 (II) *15% 적용 <sup>3)</sup>	흑자전환후 2년간 면세, 이후 3년간 50% 경감	다음 사항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일반 투자장려 투자 · 투자장려지역(B그룹) 투자 · 투자기간 만료후 베트남정부에 자산이 무상 이전되는 사업 · 산업공단 입주업체로 제품 50%이상 수출기업 · 수출가공공단내 서비스업 영위	제품의 50% 이상 80% 미만 수출 (제조업)	모든 서비스업
	우대세율 (III) *10% 적용주 <sup>4)</sup>	흑자전환후 4년간 면세 이후 4년간 50% 경감	다음 사항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우대세율(II)의 요건중 2개 충족시 · 특별 투자장려 분야 · 공업단지 인프라 개발기업 및 수출가공구내 기업 · 의료, 교육훈련, 과학연구분야	제품의 80% 이상 수출 (제조업)	모든 제조업

주 1) 법인세의 우대세율은 투자허가 취득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실효되며 28% 표준세율로 환원됨.

- 2) 생산 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후 실효
- 3) 생산 개시일로부터 12년 경과후 실효
- 4) 생산 개시일로부터 15년 경과후 실효

자료 : KOTRA

### III 외국인투자 환경

- 수출가공구는 일반지역과 엄격하게 분리/운영되는 지역으로서 수출입시 관세가 면제되나 국내 시장간의 상품교환은 국가간 교역으로 간주하여 수출입세를 부과함. 수출가공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베트남 정부는 일반지역보다 유리한 세제혜택과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음.
- 2001년 3월, 소프트웨어와 IT산업 전담 산업단지가 호치민시 인근 Quang Trung에 지정됨. 입주비, 인터넷 사용료, 개발보조금 등에서 특혜가 주어짐.

#### □ 산업별 인센티브

- 외국인투자법은 특정 산업의 투자우대조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생산 상품을 수출하거나 시행령에 명시된 미개발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 첨단기술 산업과 사회간접자본 개발 사업을 장려하고 있음.
- 2001년 3월, 베트남 정부는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조치를 발표함.
  - 외국인투자 IT산업에 대해서는 4년간의 법인세 면제, 향후 4년간 5%, 이후 10%의 법인소득세 적용.
  - 외국인투자 IT산업에 대해서는 4년간의 법인세 면제, 향후 4년간 5%, 이후 10%의 법인소득세 적용.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30%이상 베트남 자원 사용, 생산품의 30% 이상 수출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3) 외국인투자 규제 조치

#### □ 일반 사항

- 무기류, 특정한 공공설비, 금 및 귀금속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금지되고 있음.
- 투자규모의 최고 자본액과 최저 자본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합작 투자의 경우 외국측 법적자본 비율이 총 자본의 30% 이상이어야 함.
- 투자 시한은 원칙적으로 5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 연장이 가능한 천연자원 개발이나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사업도 7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외국인이 교육, 의료, 인쇄 등의 분야에 취업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으며, 1992년부터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변호사, 회계사 업무가 허용되고 있음.

#### □ 투자허가시 규제

- 베트남 정부는 현재 외국인의 투자 관심도가 가장 높은 섬유류 및 신발 생산과 호텔, 사무용실 빌딩, 아파트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허가지침을 발표하였음.
- ① 섬유류 및 신발류 생산부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할 경우
  - 합작투자과 사업협력계약 기업은 생산량의 80%, 외국단독투자 기업은 90%이상을 수출해야 하며, 또 투자유형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자가 수출시장을 확보해야 함.

### III 외국인투자 환경

- 도입하는 중고기계 및 설비는 신품과 비교 80%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수입검사를 받아야 함. 단, 운송장비는 신제품이어야 함.
  - 부지 내 거주주민 이전 및 보상비용을 베트남측 파트너, 외국측 또는 설립법인 누가 지급하든 법정자본금으로 인정하나 베트남측 파트너가 출자한 토지사용권과 정부에 내는 토지임차료 등은 포함되지 않음.
- ② 호텔, 사무용빌딩, 아파트 건설부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할 경우
- 호텔은 3스타급 이상의 건축에 한함.
  - 합작호텔은 외국의 호텔경영회사에 경영을 위임할 수 있으나 상표사용 및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 경영 서비스료가 매출액의 3% 또는 세전수익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경영위임기간도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 인민위원회 토지사용면적 및 임차료에 관한 추천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주주민 이전 및 보상비용은 법정자본금으로 간주.

#### □ 환경규제

-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설립 신청서중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서에 환경보호대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업의 설립허가서는 그 영업의 본거지가 있는 현 내지 중앙직할시의

인민위원회가 발급함으로써, 이들 지방인민위원회가 기업의 환경 대책에 대하여 평가하게 됨. 지방 인민위원회는 환경보호대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투자 불허를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음.

- 토지법에서는 해변에 있는 농지, 임야는 환경과 생태계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므로 토지사용자에게 특별히 환경보호의무를 부과하며 (토지법 제48조), 시내에 있는 농지, 임야는 환경 및 도시경관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름.
- 베트남 정부는 공해방지를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나 아직은 산업발전단계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시행을 보류중임. 그러나공단입주기업 선정시 피혁산업, 염색산업 등 공해관련 산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등 베트남에도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2. 외국인투자여건

### 가. 무역 및 외환관리제도

#### (1) 수출입 허가

- 외국기업은 수출입허가를 받은 베트남 기업만을 대상으로 거래할 수 있음. 특정기업이 특정 품목에 대해 거래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베트남 상공회의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III 외국인투자 환경

- 베트남의 수입은 수입관세, 수입수량제한, 소비세 부과, 수입허가제 등으로 규제수준이 상당히 높음.
-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품목: 중고소비재, 무기 및 탄약류, 중독약품, 유해 화학물, 담배 등.

#### (2) 관세제도

##### □개요

- 외국기업에 의하여 수출입되는 물자에 대하여 수출입관세가 부과되거나 합작기업이나 BCC 사업을 위해 자본으로 출자되는 기계장비, 설비, 부속품, 사업용 설비 등과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료, 부속품 등 기타 물자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면제됨.
- 그러나 이들이 베트남 국내 시장으로 양도·판매될 때는 관세 및 매출세가 부과됨.

##### □부과대상

- 정부의 허가를 얻어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은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품질, 성격, 원산지에 따라 결정되며 종가세임.
- 수출품은 FOB가격, 수입품은 CIF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며 과세가격은 dong화를 기준으로 함.

##### □관세의 면제

- 재수출을 위한 일시적인 상품의 수입, 박람회와 전시회를 위한 상품

반입, 재수입을 위한 일시적인 수출, 가공수출을 위한 천연자원 및 기타 원자재의 수입

- EPZ(수출가공구)에서 수출입되는 물자, 단 EPZ가 국내에서 반입한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

#### □ 관세의 조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상품 및 외국인의 상호 사업협력계약하의 상품 수출입 기타 투자 장려가 필요한 경우 관세를 환급함.
- 1995년 아세안에 가입한 베트남은 2006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동유효특혜관세제도에 따라 1,600개 품목에 대해 0-5%까지 관세를 인하하여야 함.
- 2001년 베트남 정부는 2006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할 6,130개의 품목을 발표하였음. 몇몇 소비재와 과일류, 기계류는 현행 25-50%의 관세율에서 20%이하로 조정되었으며, 향후 5% 이내로 재조정될 예정임.
- 부가가치세: 베트남은 수입품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판매되었을 경우 이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3) 외환관리제도

#### □ 외환통제

- 1994년 10월 이후 외국환의 거래가 외국환은행간 시장(foreign currency interbank market)을 통해 허용됨.

### III 외국인투자 환경

- 정부는 전일의 은행간 거래 환율을 평균하여 당일의 공식 환율을 고시함. 이와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은 dong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조치임.
- 정부는 또한 지역 경제의 '달러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dong화를 달러로 교환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반드시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도록 하고 있음.
- 2001년 1월 발표된 Decree 05는 위와 같은 외환거래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회사는 자금조달을 위한 외화매입이 허용되나, 외환수익의 절반을 dong화로 환원해야함.
-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은 대외무역은행이나 중앙은행이 인가한 국내 은행과 외국합작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에 현지통화나 외화로 구좌를 개설하여 기업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동 구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화예치금을 현지통화로 교환할 수는 있으나 현지통화 예치금을 외화로 교환할 수 없음.

#### □ 국외송금

- 베트남으로의 송금에는 제한이 없으나 베트남에 송금된 외화는 dong화로 환전하거나 외화 구좌에 예치하여야 함.
- 합작경영이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임금, 급여 및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후 외화로 국외송금할 수 있음.

- 모든 송금은 베트남 중앙은행에 등록된 은행의 구좌를 통해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거나 청산된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한 후 투자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음.

## 나. 금융제도

### □개요

- 베트남은 1988년부터 재정개혁과 더불어 금융개혁을 착수하였으나 아직 과도기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금융개혁 이전 베트남의 금융제도는 국가의 경제개발계획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으며, 특히 국영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금융정책은 주로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맞추어 적정 자금소요량을 지원해주는 신용계획(Credit Plan)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음.
- 1988년 7월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금융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중앙은행의 권한 강화, 국영전문은행의 개편, 지주은행(Share Holding Banks)의 설립허가, 일반상업은행의 외환업무 취급허용 등임.
- 베트남의 은행산업은 4대 국영은행이 총자산의 80% 차지하는 등 국영은행 중심의 안정적 영업기반을 유지하고 있고, 제도 금융권 이외의 부문에서 상당한 금융자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은행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보임.

## Ⅲ 외국인투자 환경

- 반면, 국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자산건전성이 취약하며, 낮은 국내 저축률과 단기 위주의 예금 관행, 집단소유제 등으로 담보권 행사가 어려운 법률구조 등 성장의 장애 요인들도 상존함.

<표 10> 베트남 주요 은행의 재무현황  
(2001년 12월말)

(단위: 백만 달러, %)

은행명	총자산	순자산	당기 순이익	BIS 비율	NPL 비율	ROA	ROE	비용/수익비율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5,084.0	135.0	20.7	n.a	n.a	0.4	15.3	22.3
Vietnam Bank for Agriculture	4,406.2	-30.8	-45.9	n.a	n.a	-1.2	완전 잠식	61.5
Bank for Investment & Development of Vietnam	4,080.9	142.6	13.6	n.a	n.a	0.4	4.8	38.2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Vietnam	3,867.7	121.2	10.1	n.a	n.a	0.3	8.5	54.6
Asia Commercial Bank <sup>*)</sup>	608.0	31.8	8.0	n.a	n.a	1.5	26.7	42.7

주) 2002년 12월말 기준

## □ 중앙은행

- 1988년 이전까지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 SBV)은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정부가 입안하는 생산 물류 계획에 따라 통화관리만을 해오는 정부의 금고역할에 치중하여 왔으며, 또한 상업금융기능까지 보유하고 있어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일원적 은행제도(One-tier Banking System)가 유지되어 왔음.
- 그러나 1988년 7월 최초의 금융개혁 조치에 따른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은행적 기능이 신규로 설립된 농업개발은행(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이후 농업은행으로 개칭)과 상공은행(Bank for Commerce and Industry: 이후 공상은행으로 개칭)으로 이관되었음.
- 또한 1990년 10월 시행된 신은행법에 따라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및 재할인율 조정 등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이 추가되어 금융부문의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음.

## □ 4대 국영 상업은행

- 대외무역은행(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Vietcombank): 1963년 설립되었으며 외환업무 전담, 제조 및 무역업체 지원
- 농업은행(Vietnam Bank for Agriculture): 1988년 설립, 농촌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과 공급

### III 외국인투자 환경

- 공상은행(Industrial & Commerce Bank of Vietnam: Incombank): 베트남의 산업발전을 위해 국내외로부터 자금조달 및 공급, 국내외 거래와 관련된 은행간 결제업무, 공업/운수통신/상업금융업무
- 투자개발은행(Bank for Investment & Development of Vietnam: BIDV): 1953년 설립되었으며 공공투자를 위해 국영 기업에 중장기자금 지원, 국가사업의 중장기금융 제공.

#### □ 단기금융

- 1999년 8월 이후 외국인에 대한 단기금융은 외국인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이상의 승인이나 등록을 요하지 않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단기대출을 받을 경우, 단기대출이 채무자의 총 투자자본 증가를 야기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그러나 건축분야에 있어 합법한 자본이 모두 소요되고 모든 투자자금이 소진된 경우는 예외임.
- 외국인투자 기업이 운용자본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 외국 대출을 받는 경우는 동 대출이 총 투자 자본의 증가로 간주되지 않음.
- 베트남에서 외국은행이 행하는 대부분의 대출은 공산품과 농산물을 위한 단기 무역 금융인 경우가 많음.

#### □ 중장기 금융

- 달러화 표시 중장기 금융은 중앙은행이 고시한 대출 요건을 충족시

킨다 하더라도 대출 이전에 중앙은행에 등록을 요함. 그 밖의 다른 통화로 증장기대출을 할 경우에는 집행전 중앙은행의 승인을 요함.

- 2001년의 증장기 대출은 총대출의 37%를 차지하였음.

## □ 리스 금융

- 2001년 5월 Decree 16과 9월 Circular 08의 제정으로 금융리스 산업이 점차 성장하고 있음. 이 법률은 금융리스사의 활동범위를 대폭 늘려, 1년 이상의 예치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이 나 CP를 발행하거나 국내외 은행의 차관을 도입할 수도 있음.
- 또한 제3자의 개입 없이 기계와 설비를 자체 수입할 수 있게 되었음. Decree 16은 기계류와 설비, 운송수단 및 기타 동산의 리스를 포함하나,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금융리스에 쓰이는 자산은 2002년 2월 하노이시에 개설된 보증계약 등록센터(Centre of Guaranteed Transactions)에 등록하여야 함.
- 국내 금융리스사는 최소 등록 자본 330만 달러를 현금 및 그에 상응하는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투자 금융사는 최소 500만 달러의 등록자본이 필요함.

## □ 주식시장

- 2003년 2월 현재 21개사가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 총액은 약 1억 달러로 GDP의 0.3% 수준임.
- 외국인 지분소유는 일반기업 3%, 외국기관 7%로 제한되어 있으며 한 기업의 총 외국인 지분소유는 20%를 넘지 못함.



-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최소 1년이상, 경영에 참여할 때에는 3년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외국인참여의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다. 노동

### □ 개요

- 2001년 말 7,880만명의 인구중 노동 가능인구는 약 3,95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59%로 집계됨.
- 노동가능 인구가 연평균 2.5%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 증가는 베트남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2010년에는 노동가능인구가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노동 관련법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및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은 1994년 제정 노동법(Labor Code: 1995년 발효)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외국인투자기업은 15세 미만의 베트남인을 노동자로 고용할 수 없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 베트남인을 고용할 때에는 우선 고용 알선기관을 통하여야 하며, 고용알선기관이 15일 이내에 적절한 요건을 갖춘 노동자를 찾지 못할 경우, 외국인 기업이 직접 베트남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 베트남에서 노동조합은 강력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함. 모든 노동조합은 베트남 노동연합 (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의 산하에 있음.
- 노동법은 파업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파업전에 중재절차를 거칠 것과 파업 3일전 통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공익과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파업이 금지되며, 전기, 수도, 체신 및 통신, 대중교통, 은행, 해상 및 항공 운송, 원유 추출, 연료, 국방 및 안보 분야 등이 해당됨.
- 고용계약은 기업의 대표이사와 서면으로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노동계약서에는 직무규율, 근무지, 근무시간, 휴일, 임금, 계약서의 유효기간 등을 명기해야 함.

## □ 임금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하노이 및 호치민시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월 45달러, Haiphong, Ba Ria-Vung Tau, Danang, Binh Duong, Hue 지역은 월 40달러, 기타지역은 월 35달러로 책정되어 있음.
- 수습기간중에는 최저임금의 70%만을 지급할수 있으나 그 기간이 전문직은 60일, 기타 직종은 30일을 초과할수 없음.
- 2000년 10월 Decision 1037은 특정분야의 최저임금액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senior engineer 1000달러, ordinary engineer 500달러, 통역 400달러, technician 350달러, 관리직 200달러 등임. 이는 사회보험과 의료보험을 제외한 금액임.

### III 외국인투자 환경

- 1인당 인건비에는 사회보험료의 회사부담분인 임금총액의 15%와 노동조합비의 회사부담분인 임금총액의 2%가 추가됨. 도심지 공장을 제외한 노동집약형 공장에서는 점심을 회사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초과근무수당은 통상근무일에는 통상임금의 150%, 휴일 200%, 야근 수당은 130% 혹은 135%임.

#### □ 근로조건

- 근로시간
  - 원칙적으로 주 48시간, 일 8시간 범위내
  - 고용주는 노동시간을 일 또는 주 단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으나, 노동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함.
- 휴식시간
  - 8시간 연속작업 근로자는 작업중 최소한 30분 동안 휴식
  - 야간근무자는 작업중 최소한 45분간 휴식
  - 교대근무자는 다음 작업 시작전까지 12시간 이상 휴식
- 유급휴가
  - 양력설, 음력설, 전승일, 국제노동절, 국경일 등 법정 공휴일, 상기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때에는 익일 휴무
  -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음.
    - 정상 근무상황 : 연 12일
    - 힘들고 유독한 작업장 또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근로자, 18세 이하 근로자 : 연 14일

- 작업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경우 : 연 16일
- 휴가를 위한 여행시간은 휴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가 정함.

#### □ 근로 계약의 종료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였거나, 회사에 심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 20일 혹은 월 7일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장기간의 병치료, 자연재해로 인한 업무 축소 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음.
- 징계사유에 의한 해고를 제외한 해고통지는 무기한 고용계약의 경우는 최소한 45일 전에, 1~3년 계약의 경우는 최소한 30일 전에, 1년 이하 계약의 경우는 최소한 3일전에 해야 함.
- 업무축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노조집행부와 협의 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
-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노동기관에 통지하여 30일후 해고 할 수 있음. 근로자는 해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분쟁처리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 외국인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베트남인을 고용해야 하나, 적합한 노동자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음.
- 1999년 12월 발효되고 2000년 3월 재확인된 법률(Circular 08/2000/TT-BLDTB)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노동허가서를 요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명시하고 있음.

### III 외국인투자 환경

- 개정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고용기간 3년 제한이 철폐되고, 노동허가서의 발급여부도 45일에서 단축된 15일로 규정됨.

## 라. 입지조건

### □ 투자 지역의 선정

- 투자지역의 올바른 선정은 사업의 성패와 직결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노동집약형 분야의 가공수출 방식 투자가 주류를 이루는 베트남투자에서는 사업채산성 유지를 위해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유리한 투자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의 발굴이 필수적임.
- 현지의 일반적인 진출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진출지역을 물색하는 것은 남들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입지를 선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남부와 북부는 지리적, 역사적 요인 등으로 지역적으로 분할된 시장의 면모를 보이고 있음. 또한 사회문화적 풍토의 영향을 받아 남부인들은 개방적 낙천적, 북부인들은 인내심과 조직 순응력이 강한 기질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투자지역 선정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 최근 들어 우리 기업들은 진출희망지로 남부지역 보다 북부지역을 주목하고 있음.
  - 베트남 내수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투자라면 시장규모가 큰 호치민 인근의 남부지역이 단연 유리함. 그러나 노동집약적 부분의 수출지향적인 투자라면 토지임차료와 인건비가 저렴할뿐더러 노무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북부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공장입지

- 투자입지의 유형은 크게 대별하여 공업단지와 일반지역으로 나눌수 있는데,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과 투자분야에 따라 각 입지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정 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임.
- 베트남에는 현재 50여개에 이르는 공업단지가 각지에 존재하고 있으며, 입주에 따라서는 법인세 등 우대조치가 주어지고 있음.
- 공단은 일반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고 공단 관리위원회가 인허가수속을 대행해 주고 제반 관리업무를 해주기 때문에 신규 입주와 기업운영에 편리한 점이 많으나, 임차료가 비싸고 관리비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음.
- 일반지역은 공단에 비해 인프라나 사업여건이 다소 낙후되어 있으나, 법인세 우대혜택 등에 있어 공단과 별반 차이가 없고 지방인민 위원회와의 협상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공단입주시와 마찬가지로 수입관세 환급 등 각종 혜택을 수혜받을 수 있음.
- 현재 우리 진출기업의 대다수는 노동집약형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자금부담 측면에서 공단보다는 일반지역 진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참고】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EPZ)

#### □ 개 요

- 수출가공구(Special Export Zone: EPZ)는 수출품의 생산 및 수출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정한 곳임.
- 수출가공구 기업에게는 수출의무가 부과되지만 EPZ내로의 원료, 기계, 장비 등의 반입에는 수입관세가 없으며 수출품 역시 수출세가 면제됨. EPZ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시장으로 유입 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함.

#### □ 입주조건

- 수출가공구내에는 100% 외국인투자기업, 합작기업, 사업협력계약 등의 어느 경우라도 입주할 수 있으나 가공구내의 법인격 획득이 필요함.
- 수출가공구내에서의 제품생산은 수출용에 한하며 서비스업으로는 운송업, 하역, 수리, 보험, 은행 등 수출가공구의 수출입 생산을 지원하는 업종만이 입주할 수 있음.

#### □ 특혜조건

- 법인세 감면
  - 제조업 : 이익실현 첫 해부터 4년간 면세후 10% 부과
  - 서비스업 : 이익실현 첫 해부터 2년간 면세후 15% 부과
- EPZ와 내국인과의 거래시 수입세, 수출세 부과(무역으로 간주)